

#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## 1. 개정이유

공유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(측정시설)을 완화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위탁관리업 등록기준(측정시설) 변경(안 별표 2)

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##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제2호라목의 등록기준란 중 ‘소유할’을 ‘소유하거나 임차할’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(생    략)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2. 시설                 | 2. ---              |
| 가. ~ 다. (생    략)      |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   |
| 라. 측정시설               | 라. -----            |
|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        | -----               |
| 이동용    위성항법보정수신       | -----               |
| 기 2대 이상을 <u>소유할</u> 것 | ----- <u>소유하거나</u>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<u>임차할</u> ---      |